《교육칙어》의 반동성

리성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법이 어떤 법이였습니까? 그것은 일본천황과 일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를 위한 법이였으며 일본의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일본근로인민을 억압하며 착취하기 위한 법이였습니다.》(《김일성전집》제21권 483폐지)

최근 일본반동들이 교육부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교육칙어》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것을 승인하는 망동을 부리고있어 내 외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을 폭로비판하는것은 지난날의 일본군국주의가 가지고있던 교활성과 침략성을 발가놓으며 오늘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가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의 력사적근원을 정확히 해명하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하나이다. 이것은 특히 근 반세기에 걸쳐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헤아릴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강요당하였으며 오늘 또다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다시 리용하려고 하는 《교육칙어》는 1890년 교육에 관하여 왜왕이 직접 한 말이였으며 일본의 교육교범이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신정부에 의한 1872년의 《학제반포(학제를 널리 퍼뜨림)》와 1879년의 《교육령》, 1886년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에 의한 《학교령》 등이 련발된데 이어 1890년 10월에는 모도다 에이후(추밀원고문이며 유교학자), 이노우에 고와시(1889년 일본헌법과 왕실과 관련한 법제정에 참가한자)가 작성한 초안에 기초하여 왜왕의 명의로된 《교육칙어》가 발포되였다.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법이라는 명칭을 달지는 않았으나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왜왕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초법규적규범으로 취급되여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강요되였다.

《교육칙어》는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국주의정책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수단의 하나였다.

《교육칙어》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교육부문에서 군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수단이였다는데 있다.

군국주의는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군사화하고 모든 것을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복종시키는 반동적인 정책이다.

군국주의는 대내적으로 국가체제를 반동화하고 전쟁소동을 일삼으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는데서 표현된다.

《명치유신》후 군국주의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고취하고 실현하는것은 당시 일

본의 지배계급, 군국주의자들의 일치한 의사였고 요구였다. 이것을 실현하는데서 왜왕을 내세우는것은 군국주의자들의 리해관계에 적극 부합되였다.

그것은 군국주의정책실현에서 왜왕이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된다.

자본주의정권을 수립한 일본반동세력은 군국주의를 저들의 사활적요구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형태로서 신적존재로 설교된 왜왕을 내세우고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절대주의국가제도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왜왕은 군국주의자 들의 정신적기둥이였고 군국주의실현의 기본담당자였다. 그러므로 왜왕중심의 군국주의고 취는 군국주의자들에 있어서 그에 대한 종교적환상을 리용하여 일본인들에게 군국주의를 손쉽게 내리먹일수 있다는 점과 왜왕의 절대적권력행사를 보장하는 반동적인 국가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것이였다.

왜왕을 리용한 군국주의고취는 이미 일본침략군대내에서 시작되였다.

1882년 1월에 공포된 《군인칙유》에서는 《짐은 너희들 군대의 대원수이다. 그러므로 짐은 너희들을 손발로 믿고 너희들은 짐을 머리로서 우러르라.》라는 문장암기를 군인의 첫째가는 의무로 요구하는것을 통하여 군국주의를 적극 고취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군국주의자들은 교육부문에서도 왜왕을 통한 군국주의고취를 적극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실례로 1879년에 군국주의자인 모도다 에이후는 교육과 학문 의 대략적인 뜻을 밝힌다는 《교학대지》에서 왜왕을 《도덕의 기초로 하는 국가교육을 실 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군국화실현을 위하여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주 장하였다.

《교육칙어》는 바로 《군인칙유》를 리용하여 군대내에서 얻은 군국주의고취경험과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토대하여 제정된것이였다.

일본에서 교육은 반동통치배들의 군국주의고취와 군국주의정책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야마도민족의 우월성》을 제창하면서 민족배타주의사상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사상을 고취하는 등 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어야 그들이 군국주의를 신봉하고 추종하게 하여 그들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제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충실한 대포밥, 총알받이로 순순히 내몰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교육칙어》는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정책실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패망전 일본의 교육을 군국주의자들의 의도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강요된 사업과 생활의 기본준칙이였다.

《교육칙어》는 그 내용에서 볼 때 국민은 왜왕과 국가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맹이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나온 《군인칙유》와 일맥상통하다. 《교육칙어》에서 군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실제적집행자인 왜왕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란 본질에 있어서 군국주의에 대한 고취와 그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였다.

결국 《군인칙유》와 함께 《교육칙어》는 일본의 군대와 교육부문에서 왜왕과 그가 통 치하는 국가에 대한 숭배, 더 나아가서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중요한 정치적수단으로 리용 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교육칙어》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일본군국주의의 아성인 왜왕제를 미화분식하고 왜왕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굴종사상을 설교하기 위한 수단이였다는데 있다.

《명치유신》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왜왕을 신적존재로 내세우고 그의 절대적권력행 사밑에서 정치적지배를 실현해나가려는 왜왕절대주의국가제도를 수립하려 하였다. 이것은 착취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반인민적인 정책들을 신적존재로 설교된 왜왕 을 통하여 선포하고 실시함으로써 그 계급적본질을 가리우고 인민들을 그에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명치유신》후 일본에서는 력사적으로 볼 때 지난 시기 거의 아무러한 권한 도 행사하지 못하던 가련한 존재였던 왜왕을 급작스럽게 절대적권력을 가진 최고권력자로 내세우면서 왜왕을 절대군주로 하는 국가에 《충성》다할것을 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왜왕에 관한 신화적의미에 기초하여 《세계는 한지붕》이라는 《팔광일우》구호를 제창하면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침략에도 광분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 군사봉건적자본주의발전의 길에서 점차 왜왕과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절대군주제의 유지강화를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과제로 내세우면서 그 실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1890년 왜왕에 의하여 발포된 《교육칙어》였던것이다.

《교유칙어》에서는 일본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은 왜왕의 《조상신》과 그 후손이 대대로 통치하게 되여있는 왜왕제국가, 《신국》이며 따라서 일본에서는 왜왕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황도정신》배양과 봉건유교도덕을 중심내용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설교해야 하며 왜왕제국가에 《충성》다하는 순양한 국민을 키우는 왜왕숭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뗘벌인 《신국》이니, 《만세일계》의 왜왕이란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한 반동적선전에 불과한것이다.

왜왕은 막부시기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가련한 존재였다.

막부가 출현한 후 《명치유신》에 이르기까지 왜왕은 일본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아니였다.

중세기에 대두한 사무라이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왜왕파는 1221년 가마꾸라막부타 도의 구호를 들었으나 패배하였다.

그후 왜왕세력은 쇠퇴일로를 걷고 막부세력이 일본에서 실질적인 통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왜왕의 계승문제는 반드시 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아시까가막부시대 왜왕세력의 쇠퇴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 막부의 우두머리였던 아시까가 요시미쯔는 명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자기를 《일본국왕》이라고 자칭한바가 있었다.

도꾸가와막부중기 당시 막부의 리론적, 정책적지도자였던 아라이 하구세끼는 국가체 제에서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막부의 우두머리인것만큼 대조선외교관계에서 막부의 우 두머리도 《일본국왕》의 칭호를 써야 한다고 건의하여 일시 채용된바도 있다.

당시 왜왕은 도꾸가와막부의 엄격한 감시밑에 놓여있었다. 왜왕은 막부로부터 록봉 3만석을 받고 정치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여있었다.

한때 도꾸가와의 친족인 미도번령주 도꾸가와 미쯔구니가 《대일본사》를 편찬하면서 《존왕》을 설교한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권력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종교적, 전 통적《권위》로서 형식적으로 존재하고있던 왜왕을 《존경》한다는것으로서 도꾸가와막부의 전제정치를 미화분식하고 봉건제도를 정당화하는데 리용하였을뿐이였다.

막부타도와 《명치유신》실현에서 사상적추진력으로 된것은 《존왕양이》론이였다.

원래 《존왕론》과 《양이론》은 발생한 시기도, 내용도 달랐으며 처음부터 결부되여있은 것은 아니였다.

외래자본주의세력에 개항의 문을 열어놓아 자본주의상품경제에 휩쓸려들어가면서 막부의 봉건적경제질서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농민, 수공업자들과 하층사무라이들의 빈궁화가 촉진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자본주의렬강의 강요앞에 굴복하고 불평등조약을 맺고 경제생활을 파란에 몰아넣은 막부에 대한 반대기운이 높아졌다.

《신국을 더럽히는 양이들앞에 굴복》하고 개국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막부에 대한 실망과 분격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하층사무라이들속에서 《양이》기운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특히 막부가 《개항》을 독단적으로 강행한것은 《존왕론》과 《양이론》을 불가분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종래 관념적으로만 주장되여온 《존왕론》은 반막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존왕론》이 《양이론》과 결부됨으로써 《존왕론》의 성격은 변화되였다. 그것은 왜왕의 형식 적권위를 리용하여 각 번에 분산되여있던 막부반대세력을 규합시키고 막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막부타도운동의 정치사상적리론으로 전화되였다.

막부타도직후 《명치》정부는 중앙집권은커녕 그가 실제적으로 지배한 지역도 깅끼지 방에 국한되여있었던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정치적혼란과 공백상태는 계속되였다. 내란상 태를 끝장내고 극히 취약한 《명치》정부의 정권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왜왕이 가지고있던 《종교적권위》를 리용하는것은 일본착취계급, 지배계급에게 있어서 급선무로 나섰다.

그리하여 일본지배계급은 오랜 력사적기간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였던 왜왕의 권위를 급속히 높이고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절대군주제를 확립하여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실현하였던것이다.

자본주의제도수립후 력대 왜왕들은 지주, 부르죠아지들의 의사와 요구의 대변자, 리익의 옹호자로서 일본인민들에 대한 최대의 착취자, 억압자였으며 일본군국주의의 두목이며 침략과 전쟁의 장본인, 최대의 전범자였다.

《교육칙어》의 허황한 설교는 일본인민들을 왜왕과 군국주의정책실현의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신봉자, 추종자로 키워 반동적인 왜왕통치에 굴종시키며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마당에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정치적의도의 반영이였다.

《교육칙어》의 이러한 왜왕숭배사상은 그것이 발포된 이후 련발된 일련의 준칙과 규칙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 주입되고 고취되였다.

일본의 소학교들에서는 1891년에 공포된 《소학교설비준칙》에 따라 왜왕과 왕후의 사진을 걸고 《교육칙어》를 보관하는것이 의무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같은해에 발포된 《소학교교칙대강》에 따라 왜왕에 대한 숭배와 복종을 설교하는 《수신》과목이 새로 나와 그것이 전체 학과목들중에서 첫자리에 놓이게 되였으며 《소학교 교장 및 교원직무, 복무규칙》에 따라 교원들은 《교육칙어》를 《반드는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이른바 《충군애국》을 알맹이로 하는 《교육칙어》는 일본군국주의의 정신적지 주인 왜왕제를 미화분식하고 왜왕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노예적굴종을 설교함으로써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으며 일본인민을 《황민화》하는 사상 정신적도구로 되였다.

《교육칙어》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오늘 일본사회를 우익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기어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흉악한 목적실현에 복무한다는데 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교육칙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강제조치에 의하여 1946년에 폐지되였으며 1948년 법적으로 정식 사용이 금지되였다.

그런데 오늘 일본반동들은 《법제상효력의 상실》이요, 《애국심교육》이요 뭐요 하면서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혀있던 《교육칙어》를 끄집어내여 교육현장에서 공식 사용하도록 하 고있다.

2017년 일본방위상은 모리또모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태평양전쟁시기의 《군가》를 부르고 이전 왜왕의 《교육칙어》를 외우도록 하고있는것을 극구 옹호하면서 《전쟁전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중학교들에서 총검술을 필수과목으로 배워주게 하고 파쑈독재광 히틀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나의 투쟁》을 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이러한 일본교육계의 현실은 신성한 교단에서 칼을 차고 해외침략을 부르짖으며 소학교학생들에게까지 목검채를 쥐여주어 군사훈련에 내몰던 어제날의 군국주의자들의 망동을 방불케 하고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그 위험성을 깨닫고 그를 반대하여 적극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모든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와 재침열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로골 적인 선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야금야금 마련해온 일본반동들이 이제는 나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맹목적인 왜왕숭배와 인간증오사상을 주입시키고있는것은 새 세대들을 어릴 때부터 파쑈적으로, 야수적으로 길들이며 일본사회를 우익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기어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나라의 전도와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신성한 교육을 죄악으로 얼룩진 군국주의력사와 해외침 략전쟁을 미화하고 새 세대들을 무지막지한 야수로, 극단한 정신적기형아, 죄의식을 모르 는 철면피한들로 만드는데 악용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세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로 만들고 침략전쟁을 벌리는 과정에 감행한 인간살륙만행은 오늘도 인류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미화분식하고있을뿐아니라 새 세대들에게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심어주고 해외침략야망을 주입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진보적인사들은 물론 주요언론까지 《군국주의부활을 상징하는 〈교육칙어〉사용을 허용할수 없다.》,《군국주의교육을 당장 걷어치우라.》라고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느니, 《력사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날로 높아가는 규탄여론을 무마시켜보려고 놀아대고있지만 군국주의부활을 미화분식하고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침략자들의 돌격대로 만들어 재침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제반 사실은 오늘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은 미국과 함께 그의 비호밑에 군국주의재침의 길로 질주하고있는 일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제동 풀린 《군국주의렬차》를 전쟁궤도에 올려놓고 미친듯이 몰아가고 있지만 그 종착점은 자멸뿐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광증으로 세뇌시키려는 망동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과 인류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며 재침의 칼을 갈고있는 일본 반동들의 침략적정체와 위험성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놈들의 군국주의부활 책동을 단호히 저지분쇄해버려야 한다.

실마리어 일본,《교육칙어》